

본 안내책자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2017

Let's Together

☎ 고객상담센터 : 1350





Contents

I.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7

- | | |
|-------------------|---|
|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 8 |
| 2. 고용장려금 찾기 |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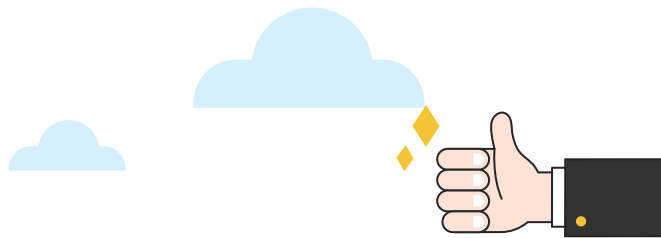
II. 고용창출장려금 13

- | | |
|-------------------|----|
| 1. 사업 개요 | 14 |
| 2. 지원 절차 | 14 |
| 3. 2017년 주요 제도 변화 | 15 |
| 4. 지원유형 | 16 |
| 5. 지원제외 근로자 | 17 |
| 6. 감원방지 의무 | 19 |
| 7.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 20 |

III. 고용안정장려금 39

- | | |
|----------------------|----|
| 1. 사업 개요 | 40 |
| 2. 지원 절차 | 40 |
| 3. 2017년 주요 제도 변화 내용 | 41 |
| 4. 지원유형 | 42 |
| 5. 지원제외 근로자 | 43 |
| 6.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 44 |





IV. 고용유지 지원

53

- | | |
|-----------------------|----|
| 1. 고용유지 지원금 | 54 |
| 2.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64 |

V. 청년 · 장년 고용 장려금

67

- | | |
|----------------------|----|
| 1. 청년내일채움공제 | 68 |
| 2. 장년고용 지원금(장년인턴제) | 69 |
| 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 70 |
| 4. 임금피크제 지원금 | 71 |
| 5.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 72 |

VI. 고용환경개선 지원

75

- | | |
|-----------------------------|----|
|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76 |
| 2. 여성 고용환경개선 지원 및 융자 | 78 |
| 3.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 80 |
| 4.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 82 |
| 5.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 84 |
| 6.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지원 및 융자 | 86 |

VII. 참고사항

89

- | | |
|---------------------------------------|-----|
| 1.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 90 |
| 2.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 ·
상호조정 및 부정행위조치 | 96 |
|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98 |
| 4. 성장유망업종 리스트 | 100 |



고용창출장려금은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 시차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 생산량 감소 ·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무급 휴업 · 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

청년 · 장년 고용지원은

-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 장년층에게 고용 기회(인턴)를 제공한 후, 정규직으로 고용
- 세대간상생 고용 노력 및 고령자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은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장애인,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구축을 지원

I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0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전문인력 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고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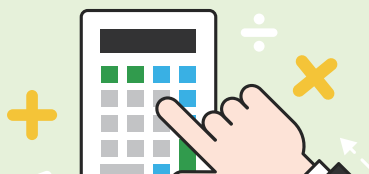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장년·고령자 고용 지원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환경개선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여성 고용환경개선 지원 및 융자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지원 및 융자



02. 고용장려금 찾기



1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다.

①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자 하며 근로자 증가가 예상된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20쪽
② 시간선택제 근로제를 도입할 여건이 된다.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24쪽
③ 성장유망업종이나 국내복귀 기업(제조업)에 해당된다.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26쪽
④ 전문적인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전문인력 고용 지원	29쪽
⑤ 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1쪽
⑥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고용하려고 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72쪽
⑦ 청년을 고용하여 장기 근속하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68쪽
⑧ 최근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했거나 인턴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장년고용 지원금	69쪽
⑨ 정년을 정한 적이 없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70쪽

2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① 기간제/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육아휴직 여성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50쪽
②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50쪽
③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50쪽
④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정규직전환 지원	44쪽
⑤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46쪽
⑥ 중소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새로이 도입하려 한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48쪽
⑦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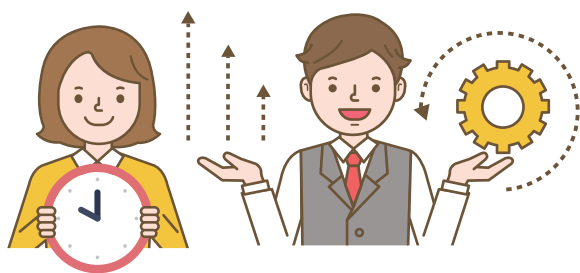
3 고용을 감소시켜야 하는 사정이 있다.

①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훈련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54쪽
② 기업 사정이 어려워 휴업·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64쪽

4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①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76쪽
②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여성 고용환경개선 지원 및 융자	78쪽
③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	80,82쪽
④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설·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84쪽
⑤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지원 및 융자	86쪽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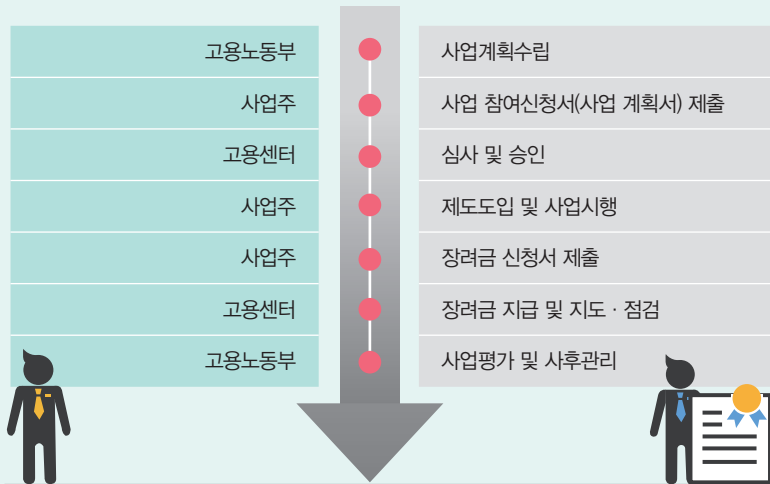
고용창출장려금

1. 사업 개요
2. 지원 절차
3. 2017년 주요 제도 변화
4. 지원유형
5. 지원제외 근로자
6. 감원방지 의무
7.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 전문인력 고용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01. 사업 개요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02. 지원 절차



① 사업 참여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국내복귀기업확인서
단,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및 융자 지원 신청시에는 투자건적서 · 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 · 임대계약서 등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 · 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

②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11월 30일까지)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 · 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03. 2017년 주요 제도 변화

- ① 최저임금 110% 미만 근로자 지원 제외
-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및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자 제외)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지원 제외
- ③ 고용창출장려금은 3개월 단위(월할 계산 안함)로 신청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시간선택제 고용지원의 경우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함
- ④ 근태관리가 중요한 지원 충족요건이 되는 경우(일자리함께하기 실근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 고용지원)는 기계 · 전자적인 장비(타임레코드, 전자카드, 지문인식기 등)로 기록된 근태관리 자료만 인정

04. 지원 유형

유형		지원 내용
사업참여 신청필요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근로자수 1인당〉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대규모기업 월40만원 (임금감소액보전)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월40만원 〈기업당〉 ▶ (설비투자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2억원 ▶ (설비투자비 융자) 최대 50억원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역·성장 산업 고용 지원	· 성장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실업자를 신규 고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제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중견기업 월30만원
	전문인력 고용 지원	· 학력, 경력,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해당 분야에 근무하게 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사업참여 신청 불필요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30만원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05.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전문인력 고용 지원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② 비상근 촉탁 근로자

③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단, 시간선택제 고용지원의 경우, 최저임금 12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⑥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⑧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② 비상근 촉탁 근로자

③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④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⑥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 ②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출소 또는 출소예정자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고졸이하 비잔학 청년 ㉫ 니트(NEET)족
-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 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⑦ 「자활근로」를 이수한 사람

06. 감원방지 의무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자원은 해당 없음



07.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도입 · 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 ·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1.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①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 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일자리 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②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않음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1년	240만원	96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240만원	1,9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 ·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 · 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0만원 이상(사업주가 최소 2.5만원 부담)일 경우만 지원 (ex. 사업주가 12.5만원을 더 준 경우, 정부지원금 10만원, 사업주 부담 2.5만원)

–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3.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VI. 고용환경개선 지원 참조(84페이지)

»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일 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일 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②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④ 최저임금 120% 이상의 임금 지급
- ⑤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실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 일할 계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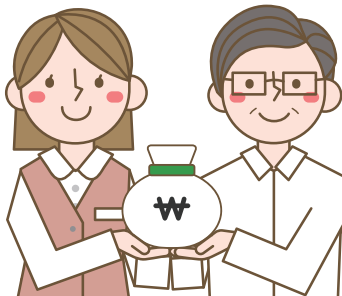
○ 장려금 지급 제외 기간

-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 ②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③ ① 또는 ②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



»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1.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성장유망업종 및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① 성장유망업종 : 성장유망업종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인 피보험자수 10인미만 기업

② 지역특화산업 :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성장유망업종: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성장유망업종(세부 리스트는 p100 (참고사항) 참고)

- ① 신재생에너지
- ② 탄소저감에너지
- ③ 고도물처리
- ④ LED응용
- ⑤ 그린수송시스템

- ⑥ 첨단그린도시
- ⑦ 방송통신 융합산업
- ⑧ IT 융합시스템
- ⑨ 로봇 응용
- ⑩ 신소재 · 나노융합

- ⑪ 바이오제약(자원)
· 의료기기
- ⑫ 고부가 식품산업
- ⑬ 글로벌 헬스케어
- ⑭ 글로벌 교육서비스

- ⑮ 녹색 금융
- ⑯ 콘텐츠 ·
소프트웨어
- ⑰ MICE · 융합관광



② 지역특화산업 :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해당 직종에 근무하도록 하고 3개월간 고용 유지

지역특화 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
섬유패션산업 (경기도 양주 · 포천)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13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141. 봉제의복제조업 142. 편조의복제조업	연구개발담당자 (디자이너 포함) 유통 및 마케팅 인력
금속가공산업 (대전광역시 대덕 · 유성구)	243. 강주물 주조업 259.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및 금속파스터 및 나사제품 제조업 292.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및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시제품엔지니어
안경산업 (대구광역시 북구)	273. 안경, 광학기계 제조 46800 상품종합도매업(무역) 46105 상품종합(무역)중개업	- 산업 · 디자이너 - 기술인력 (3D설계, CNC가공기술) - 안광학소재 R&D 및 기획 인력
생물산업 (전라남도 나주 · 목포)	107. 기타식품제조업	- 식품가공기술직(품질 관리) 및 연구개발직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성장유망업종	180만원	720만원
지역특화산업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사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버림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전문인력 고용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이하, 전문인력)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함

※ 해당 전문분야는 전문 인력의 경력·자격·학력을 ‘경영·인사·노무·재무·마케팅’, ‘제품·기술 개발’, ‘기술·기능’, ‘안전·보건’, ‘정보통신’ 으로 나누어 판단

〈전문인력 요건〉

경력 요건	① 고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② 고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정보보호 관련업무(보안제품개발, 침해사고 대응,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석, 보안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책 등)에 5년 이상 종사자 ③ 고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고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자
-------	---

자격 요건	①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원산지관리사 ② 기술사 및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명장 및 숙련기술전수자 ③ '안전·보건관리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지 않았으나, 업무의 위탁 외에 추가로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④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어 통역사 ⑤ 정보보호관련 자격증 취득자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개인정보관리사(CPPG)
학력 요건	①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고용·노동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② 이공계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60만원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지원

○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려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 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I 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II 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연 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초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었던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구 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해당 고용축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축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참고

· 지원인원 = 기준 피보험자수 - 제외 피보험자 수

구분	기준 피보험자수	제외 피보험자 수
원칙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고용축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축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수 (2017.1.1.부터 적용)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	30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0~10명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지급 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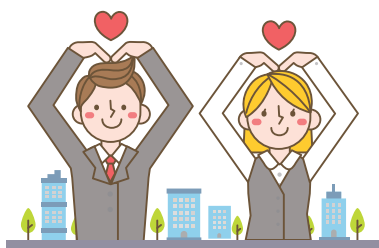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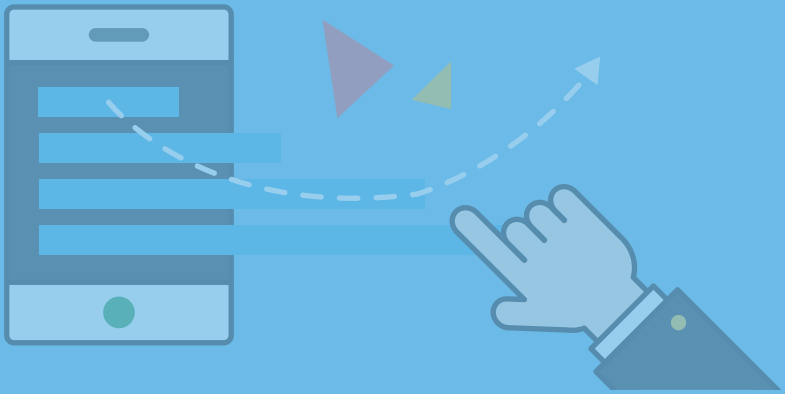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을 이수한 청년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2년간 600만원을 지원. 이 경우 지원방식, 회차별 지원금액, 환수사유 및 방식 등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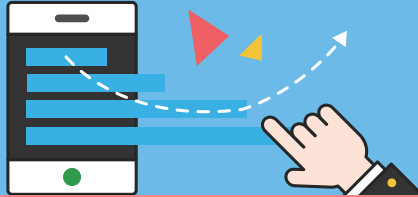
○ 2017년부터 취성패Ⅱ 유형 이수자(청 · 장년층) 지원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 종전 고시에 따라 2016.12.31. 까지 취성패(Ⅱ유형)을 이수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 · 장년층 중 종전고시에 따라 이수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은 2017.6.30. 이전에 고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청년층을 2017.7.1. 이후에 고용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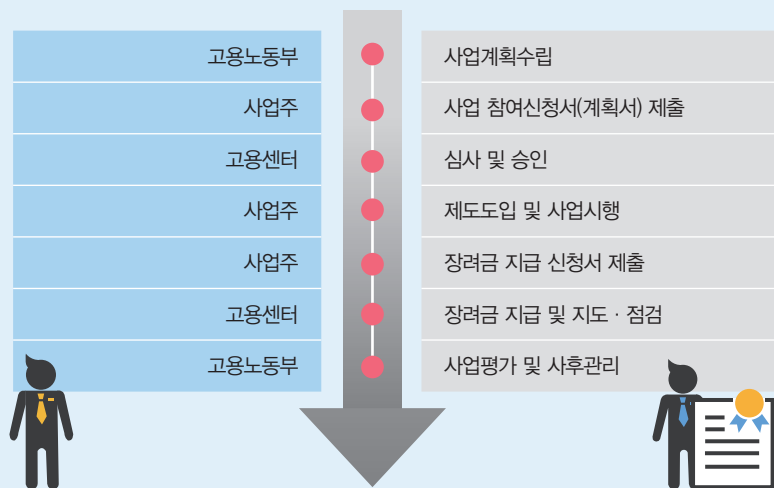
고용안정장려금

1. 사업 개요
2. 지원 절차
3. 2017년 주요 제도 변화 내용
4. 지원유형
5. 지원제외 근로자
6.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 정규직 전환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01. 사업 개요

-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의 경우 사전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원

02. 지원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단,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 및 융자 지원 신청시, 투자견적서, 계약서, 인프라구축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임대계약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운영사업' 진단 참여기업, 일家乡득캠페인 참여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일·가정양립선도기업'

(2)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11월 30일까지)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연도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03. 2017년 주요 제도 변화 내용

- 1 정규직전환지원 대상 확대(사내하도급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포함) 및 지원요건 완화(정규직전환 후 임금: 최저임금 120% 이상→110% 이상)
- 2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은 참여 신청 및 심사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 다만, 전환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초 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만 수급권이 생김
- 3 재택·원격 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융자 사업 신설
- 4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기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제외
- 5 육아휴직부여시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만 월30만원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 (1호인센티브)

⑥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2주) 포함

⑦ 근태관리가 중요한 지원 충족요건이 되는 경우(시간선택제 전환, 유연근무제 활용)는 기계·전자적인 장비(타임레코드, 전자카드, 지문인식기 등)로 기록된 근태관리 자료만 인정

04. 지원 유형

유형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정규직전환 지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보전) 최대 월40만원 (간접노무비) 월2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1주 5~10만원 ※(주1~2회) 5만원 (주3일이상) 10만원 <기업당> ▶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 지원) 최대 2,000만원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 용자지원) 최대 4,000만원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해당근로자 1인당〉 ▶ (인건비,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30만원 (간접노무비) 월 10~40만원 <table border="1" data-bbox="374 447 1003 541"> <thead> <tr> <th></th><th>육아기근로시간단축</th><th>육아휴직</th></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대상기업</td><td>월20만원</td><td>월30만원</td></tr> <tr> <td>대규모기업</td><td>월10만원</td><td>미지급</td></tr> </tbody> </table>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1호 인센티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20만원	월30만원	대규모기업	월10만원	미지급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20만원	월30만원									
대규모기업	월10만원	미지급									

05.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수습 근로 3개월 이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등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
- ② 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 ④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6.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1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2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 3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4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 수준 및 한도

① 지원 수준

- (임금증가액)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40만원 지원
 -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지원

② 지원 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까지 가능
 -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 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지원 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 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체인력지원)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과 간접노무비 지원

-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자녀보육 · 퇴직준비 · 학업 · 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전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②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전환근로자에 대하여
-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전환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연간총액
임금감소액 보전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2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 ▶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 ※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30시간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장려금 지급 제외

-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 ②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③ ①②를 2회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의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무기간과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전환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기 위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소속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를 도입·활용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및 제58조 제3항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반드시 필요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 주 5 ~ 10만원 지원

	1주
주 1 ~ 2회 활용	5만원
주 3회 이상 활용	10만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2.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지원 및 용자 지원

 VI. 고용환경개선 지원 참조(86페이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지원 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기간제 · 파견근로자 재고용시 인건비 지원

-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③ 대체인력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 하여 30일 이상 고용
-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지원 수준

① 기간제 · 파견근로자 재고용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 재고용근로자 혹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② 간접노무비 지원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회사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지원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월2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 만큼 1년 범위	시작일로부터 30일 후에 1개월 분 지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소급하여 지급
	대규모기업	월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30만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지원(1호 인센티브)

○ 지급 기간 및 주기

① 기간제 · 파견근로자 재고용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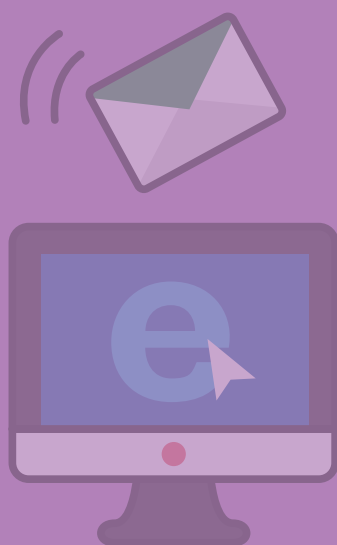
– 재고용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주기, 근로계약 체결 1년 후부터는 일괄 신청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② 간접노무비

–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IV

고용유지 지원

1. 고용유지 지원금

- (1)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 (2) 훈련
- (3) 휴직

2.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01.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①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②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③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④ 사업주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기준달: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①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④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⑧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②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 계획서의 제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 협의의 방법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변경 계획의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단축, 고용유지 대상자 수의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생략 가능

③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 시간이 20/10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④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 계속고용 의무기간 산정예시

최소한 b~d



⑤ 지원제외 사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부지급

○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 지원수준

구분	지원수준	
	일반 고용유지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4 (대규모기업2/3)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훈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기업 2/3)와 훈련비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기업 2/3)와 훈련비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3/4 (대규모기업 2/3)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고용유지 훈련의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4만 3천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1일 상한액 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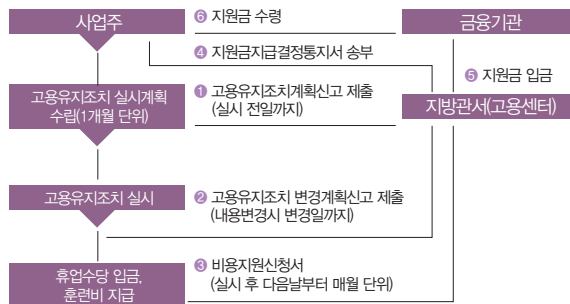
■ 지원기간

휴업 · 훈련 · 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歷) 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제출(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지급(센터)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등 각종 서식(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고용안정)

(1)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 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 고용유지 조치 실시일이 '17. 4. 1일인 경우

기준기간			직전3개월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
'16. 10월	'16. 11월	'16. 12월	'17.1월 ~ 3월	'17. 4월

* 기준기간에 산정된 총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산정함.

○ 산정예시

'17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 산정 예시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17. 3.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 '17.4.1.~ 4.30.(1개월)
- 기준기간 : '16.10.1 ~ '16.12.31(3개월)

*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3개월('17.1~3월)을 제외한 것은 가능한 정상적인 경영상태의 근로 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기준기간('16.10월~12월) 총 근로시간 : 9,783h(11,150h + 9,450h + 8,400h/3월)

구분	'16.10월	'16.11월	'16.12월	'17.1월~3월	'17.4월
총근로시간	11,540h	9,450h	8,400h		3,360h
소정근로 시간 (1일8h)	9,200h (8h*50명*23일)	8,400h (8h*50*21)	8,400h (8h*50*21)		
연장근로시간	2,300h (1일 2h*50*23)	1,050h (1일 1h*50*23)	-		
피보험자수	50명	50명	50명		50명
소정근로일수	23일	21일	21일		22일

* 유의사항 : 기준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17년 4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 '16년 10월 ~12월의 피보험자수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6년 10월에 80명, 11월에 70명, 12월에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기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이직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 (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따라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 됨

■ 고용유지조치기간('17년 4월) 총근로시간 : 3,360h(소정근로일 21일)

- '17.4.1 ~ 4.1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시간 조정 → 2,560h = 8일×20명×4h + 8일×30명×8h

- '17.4.11 ~ 4.20(소정근로일 5일) :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20명×8h + 5일×30명×0h

- '17.4.21 ~ 4.3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50명×0h

* 고용유지조치 달(4월)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에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 제외

■ 4월 중 고용유지조치 현황

- 6,423h = 9,783h(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 3,360h(4월 총 근로시간)

○ 총근로시간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근로자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 근로자
-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관리·감독업무, 감시·단속적 업무, 농림, 축산 등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 연봉제, 포괄산정 임금제 등 업무의 성과,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

○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2) 훈련

○ 훈련의 의미

- 훈련은 업무전환 또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훈련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향상된 노동력 제공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함.
- 따라서 훈련은 고용유지조치 중 가장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원요건 및 훈련과정 인정 등

■ 지원요건

-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할 것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훈련” 이어야 함(자체훈련 및 위탁훈련 구분 없이 지원)
- 훈련수료자에 대해서만 지원

■ 훈련과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 훈련과정 인정절차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름.
-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또는 새로운
-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거나 그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일 것

■ 훈련과정의 인정

훈련과정의 인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훈련과정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함.

인정신청 절차(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7일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에 훈련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 제출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 검토 또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 그 과정이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신청인은 훈련실시신고서를 훈련 개시일까지 직업훈련전산망(www.hrd.go.kr)을 통하여 입력

■ 훈련기간

- 1일 4시간 이상 총 16시간 이상 실시함
- 훈련은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고,
- 훈련기간 중에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다만,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고 계속하여 연장 실시하는 일부훈련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임금지원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중 기타금품과 일부변동급(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를 지급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훈련비 지원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집체훈련을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거나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 3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별 지원기준단가’에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함)을 지원하되 훈련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훈련인원이 30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다만,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이 산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기숙사비 및 식비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동 규정에 따른 금액

* 훈련기간 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없음.

○ 지원금 지급절차 및 신청시기

■ 신청서류

고용유지(훈련)지원금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월별 임금대장 1부, 훈련비 정산내역서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 지급절차

훈련과정 인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담당하고, 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서 신고부터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담당

①	매출액,재고량의 증감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
②	훈련계획 수립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과정 인정
④	고용유지조치(훈련) 계획신고서 제출
⑤	훈련실시
⑥	훈련비용 정산

(3) 휴직

○ 휴직의 의미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휴업 · 훈련 · 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02.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 ·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1)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 · 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2) 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 · 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 · 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 · 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 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기간 :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3)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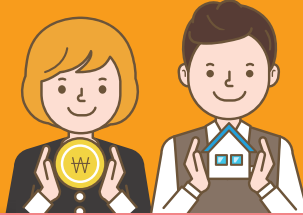
(4)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43천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일 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5)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V

청년 · 장년 고용 장려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장년고용 지원금(장년인턴)
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4. 임금피크제 지원금
5.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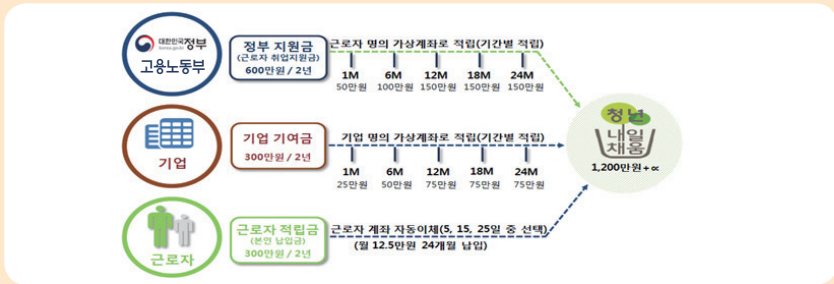
01. 청년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시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같이 적립하여 1,20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 지원요건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된 청년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

○ 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600만원 지원

(기업)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한 각 사업별로 지원금 지원

〈청년취업인턴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이수자 채용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 지급

* I 유형은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지원

○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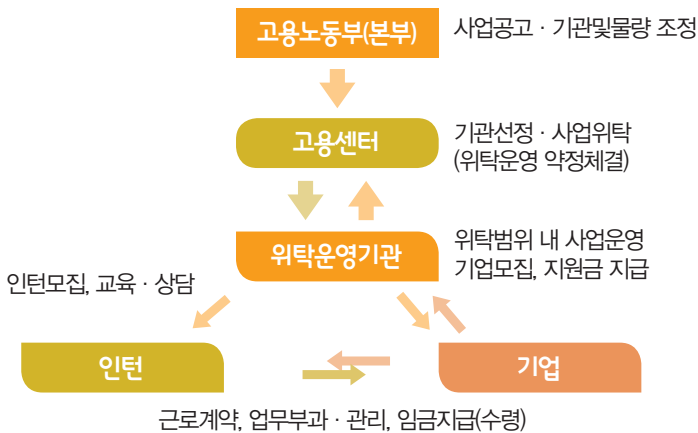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수령(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02. 장년고용 지원금(장년인턴)

○ 사업개요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 인턴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는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년고용지원금 추진체계 〉



○ 지원대상

만 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

○ 지원수준 및 기간

사업주에게 인턴기간(3개월) 중 참여자 인건비(월 60만원 한도) 및 정규직 채용시 지원금(월 60만원, 6개월) 지원(1인당 최대 540만원)

○ 신청절차

(인턴지원금) 매월 급여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정규직전환지원금)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0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장

○ 지원요건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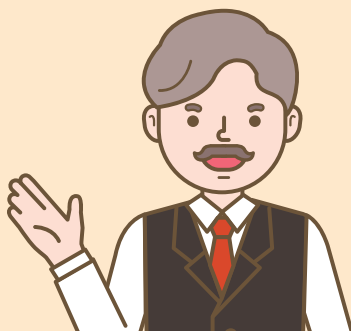
※ 지원제외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을 수급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 지원 수준 및 기간

-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기업 10%) 한도

○ 지급절차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04.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 지원요건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

○ 지원수준 및 기간

- 피크 임금에 비해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18.12.31까지 지급('18.12.31 이전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 해당 기간까지 지급)

○ 지원제외

-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임금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액된 임금과 지원금의 합계가 연간 7,2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일(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



05.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공공기관 포함)

* 다만,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 요건

①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②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

가.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

- ①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다만, 피크임금대비 감액률은 연차 구분없이 5%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② (임금체계 개편 등)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 또는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승률을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 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노력을 한 경우

나. 청년 신규채용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 ·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연간 1,080만원 또는 540만원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를 지원금액으로 함

○ 지원 한도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 · 공공기관 30%, 중견 · 중소기업 60% 한도로 다음과 같이 지원

유 형	지원금 지급 인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 수 × 3
임금체계 개편	개편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50세 이상 근로자 수 × 3
임금인상 자제	임금인상 자제 고임금 근로자 수 × 3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관련 기관별 별도정원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우편 · 방문신청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VI

고용환경개선 지원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 여성 고용환경개선 지원 및 융자
3.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자금 융자
4.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자금 융자
5.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6.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지원 및 융자

0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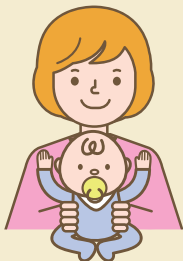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 지원수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지원내역	지원한도					
	월평균 근무 시간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주40시간 이상		60만원		120만원	
	주30시간 이상		55만원		105만원	
	주20시간 이상		40만원		75만원	
	주15시간 이상		30만원		45만원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원별기준	40명미만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이상
	지원금(월)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지원신청시기

– 1개월 분에 대해 매달 신청 원칙, 신청기한은 매월 다음달 마지막 날

○ 지급절차

–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5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7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6

02. 여성 고용환경개선 지원 및 융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여성 고용친화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비·교재교구비 무상 지원, 직장 어린이집 및 여성 고용친화시설비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지원수준 및 한도

■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3억원(사업주 단체 6억원)*, 산업단지형은 최대 20억원(컨소시엄형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교체시는 3천만원까지)까지 무상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8억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

■ 융자지원

직장어린이집 또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매입·임차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연 1~2%로 7억원까지(공동 9억원)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지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여성고용친화시설 : 모유 착유(수유)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출산 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

○ 지원신청시기

- 공사 계약서상의 착공일, 시설 매입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용자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용자는 담보신용 등의 사유로 대행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대출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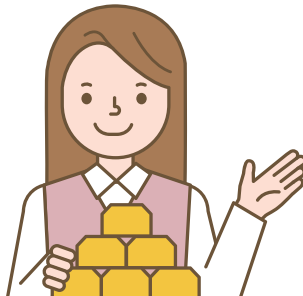
○ 지급절차

지원 · 용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5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7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6



03.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구입·설치·수리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구분	지원 유형	지원 범위
시설 비용	• 작업시설 –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설 • 부대시설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시설 투자비 전액

○ 지원수준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의무고용인원의 25% 중증 고용 조건)
- 융자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연 1%

용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사업주 용자 · 지원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등
 - 용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



04.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자금 융자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내용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시설·장비 투자비 전액)

○ 지원수준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 원 한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 1억 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
- 대출금리 : 연 1%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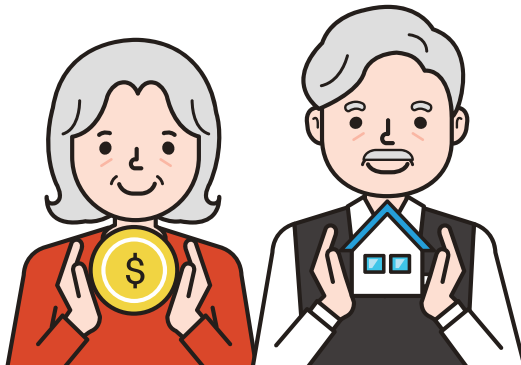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신청일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시설·장비 개선계획서 등
- 융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체(예정지 포함)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



05.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 지원대상

–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설비투자 융자지원) 모든 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 설비투자비 :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건물, 토지 등 부동산은 제외)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 등〉

투자 종류	지원금의 용도	지원방식
설비투자비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시설 건립비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융자
시설 매입비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시설 임차비	일자리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소유 · 매입 · 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지원내용

- (설비투자비 지원) 총 투자비의 1/3 범위 내에서 일자리함께하기를 통해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비제조업 500만원, 제조업 1,000만원 *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
- (설비투자 용자지원)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융자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융자는 담보 · 신용 등의 사유로 대행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대출할 수도 있음.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융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체(예정지 포함)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 대출약정체결관련은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052)704-7357로 문의

06.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지원 및 융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요건

- 사업주가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시설·장비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시 인정된 것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등〉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노무 관리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설비·장비 구축비	▶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융자

※ 재택·원격근무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전체 투자비용을 다음의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함

※ 사업주 직접 투자 (1) : 인프라구축비 지원 (1) : 융자 지원 (2)

○ 지원내용

- (인프라구축비 지원) 인프라 구축비의 1/4 이내, 2,000만원 한도
- (인프라구축비 융자) 인프라 구축비의 1/2 이내, 4,000만원 한도 이율 연 1%,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융자는 담보·신용 등의 사유로 대행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대출할 수도 있음.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융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체(예정지 포함)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 대출약정체결관련은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052)704-7357로 문의







VII

참고사항

1.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2.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 · 상호조정 및 부정행위조치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4. 성장유망업종 리스트

01.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①교대제 도입 확대, ② 실근로시간단축제, ③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지원 기간</th><th>3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tr><td rowspan="2">제조업</td><td>우선지원</td><td>2년</td><td>240만원</td><td>1,920만원</td></tr><tr><td>대규모</td><td>1년</td><td>120만원</td><td>480만원</td></tr><tr><td rowspan="2">비제조업</td><td>우선지원</td><td>1년</td><td>240만원</td><td>960만원</td></tr><tr><td>대규모</td><td>1년</td><td>120만원</td><td>480만원</td></tr></table> •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 증가 근로자 1인당 비제조업 500만원, 제조업 1,000만원(2억원 한도) • [설비투자비 용자]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지원 1%, 대규모 2%)	구 분		지원 기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제조업	우선지원	2년	240만원	1,920만원	대규모	1년	120만원	480만원	비제조업	우선지원	1년	240만원	960만원	대규모	1년	120만원	480만원
	구 분		지원 기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제조업	우선지원	2년	240만원	1,920만원																					
대규모		1년	120만원	480만원																						
비제조업	우선지원	1년	240만원	960만원																						
	대규모	1년	120만원	480만원																						
시간 선택제 고용 지원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채용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연장근로 1주 5시간 이내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1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tr><td colspan="2">우선지원 대상</td><td>60만원</td><td>720만원</td></tr><tr><td colspan="2">대규모</td><td>30만원</td><td>360만원</td></tr></table> * 직전년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 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금 지급 제외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지역· 성장산업 고용지원	① 성장유망업종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가 된 피보험자 10인 미만의 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 유지 ②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대상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 유지 ③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제조업으로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table><tr><th colspan="2">유형</th><th>3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tr><td colspan="2">성장유망업종</td><td rowspan="2">180만원</td><td rowspan="2">720만원</td></tr><tr><td colspan="2">지역특화산업</td></tr><tr><td rowspan="2">국내 복귀 기업</td><td>우선 지원 대상</td><td>180만원</td><td>720만원</td></tr><tr><td>중견</td><td>90만원</td><td>360만원</td></tr></table>	유형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성장유망업종		180만원	720만원	지역특화산업		국내 복귀 기업	우선 지원 대상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유형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성장유망업종		180만원	720만원																							
지역특화산업																										
국내 복귀 기업	우선 지원 대상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전문인력 고용 지원	경력·자격·학력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	<table><tr><th>구 분</th><th>3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tr><td>우선지원 대상</td><td>60만원</td><td>720만원</td></tr></table>			구 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구 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지원 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최저임금 110%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table><tr><th>구 분</th><th>6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tr><td>우선지원 대상</td><td>360만원</td><td>720만원</td></tr><tr><td>대규모</td><td>180만원</td><td>360만원</td></tr></table>			구 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구 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고 용 안 정 장 려 금	정규직 전환 지원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② 정규직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임금증가액] 전환근로자 1인당 최대 월 4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임금 감소액 보전 · 간접 노무비	① 전환 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② 2주 이상 시간선택제로 전환 ③ 4대보험 가입 ④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⑤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 [전환근로자 지원] <table><tr><th>구 분</th><th>1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tr><td>모든 기업</td><td>최대 40만원</td><td>480만원</td></tr></table>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 인력 인건비	위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table><tr><th>구 분</th><th>1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tr><td>우선지원 대상</td><td>60만원</td><td>720만원</td></tr><tr><td>대규모</td><td>30만원</td><td>360만원</td></tr></table>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①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거나, ② 재택 · 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	•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원을 1년간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인프라 구축비의 1/4 이내 2,000만원 한도 • [인프라구축비 용자] 인프라 구축비의 1/2 이내 4,000만원 한도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연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기간제 파견 근로자 재고용	임신, 출산전후 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육아 휴직 등 부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간접노무비] <table><tr><th>구 분</th><th>지원대상</th><th>1개월 단위</th></tr><tr><td rowspan="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td><td>우선지원 대상</td><td>20만원</td></tr><tr><td>대규모</td><td>10만원</td></tr><tr><td>육아휴직</td><td>우선지원 대상</td><td>30만원</td></tr></table> * 1호 인센티브 10만원	구 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20만원	대규모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구 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20만원												
	대규모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대체 인력 지원	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②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③ 동 휴가 · 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table><tr><th>구 분</th><th>1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tr><td>우선지원 대상</td><td>60만원</td><td>720만원</td></tr><tr><td>대규모</td><td>30만원</td><td>360만원</td></tr></table>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유지지원금	• 경기 변동 ·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경우 지원 제외) * 매출액, 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 휴업 : 1개월간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조정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 부여 • 훈련 :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 실시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 휴직수당의 2/3 (근로시간단축률 50% 미만 대규모기업 1/2) 지원 • 훈련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지원 • 근로자 1인당 1일 46,584원 한도로 지원 (훈련비 별도) • 휴업 · 훈련 ·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이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 · 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 조치한 경우(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평균임금 50%(1일 43천원) 이내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청·장년고용지원	• [청년] 만15세~34세 이하로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된 청년 • [기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	•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600만원 지원 • [기업]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한 각 사업별로 지원금 지원 <청년취업인턴제>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500만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이수자 채용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 지급 * I 유형은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지원
장년고용지원금	• 만 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인턴 인건비] 월 60만원 3개월 지급 • [정규직 채용 지원금] 월 60만원 6개월 지급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을 초과하여 고용	• 분기별 18만원을 근로자 수의 20% 한도에서 지원(단, 대기업은 10% 한도)
임금피크제지원금	• 정년 60세 이상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55세 이후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급 제외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금액을 연간 1,080만원 한도에서 지원 * 감액된 임금과 지원금의 합계가 7,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18.12.31까지 지원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환경개선지원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 아래의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 중 택일 ①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판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의 요건을 준용 * 단, 피크임금대비 감액률은 연차구분없이 5%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② (임금체계 개편)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 •세 대 간 상 생 고 용 노 력 과 더 불 어 청년(만15~34세) 정규직 신규채용	•세 대 간 상 생 노 력 적 용 근로자 1인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지급 임금의 75% 지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① 보육아동 중 당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 수가 1/3 이상 또는 ② 당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수가 1/4 이상이면서 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의 자녀 수 1/2 이상	•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을 한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비율만큼 매월 지급 •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아동 수에 따라 전월분에 대하여 월 200~250만원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비율만큼 매월 지급																	
	여성고용 환경개선 지원 및 융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 매입·임차 하거나 운영주인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주	• [설치비용 무상지원] <table><tr><th>유 형</th><th>대상기업</th><th>지원금액</th></tr><tr><td rowspan="2">단독</td><td>우선지원대상</td><td>4억원</td></tr><tr><td>대규모기업</td><td>3억원</td></tr><tr><td rowspan="2">사업주 단체</td><td>우선지원대상</td><td>8억원</td></tr><tr><td>대규모기업</td><td>6억원</td></tr><tr><td rowspan="2">산업단지형</td><td>산업단지형</td><td>최대 20억원</td></tr><tr><td>컨소시엄형</td><td>최대 10억원</td></tr></table> • [교재교구비 무상지원] 대규모기업 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한도 지원(교체는 3천만원) • [융자지원] 7억원 한도(공동 9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우선1%, 대규모 2%)	유 형	대상기업	지원금액	단독	우선지원대상	4억원	대규모기업	3억원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대상	8억원	대규모기업	6억원	산업단지형	산업단지형	최대 20억원	컨소시엄형
유 형	대상기업	지원금액																		
단독	우선지원대상	4억원																		
	대규모기업	3억원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대상	8억원																		
	대규모기업	6억원																		
산업단지형	산업단지형	최대 20억원																		
	컨소시엄형	최대 10억원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	장애인을 고용시설 구입·설치·수리 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장애인 고용 및 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 장애인 1인당 1억원,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단, 의무고용 인원의 25%는 중증 장애인이여야 함)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연 1%)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용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타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용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준)고령자 1인당 1억원, 사업주당 10억 한도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연 1%)
일자리 함께 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용자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써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 [시설투자비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비제조업 500만원, 제조업 1,000만원 (2억한도) • [설비투자비 용자]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1%, 대규모2%)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용자	재택·원격 근무도입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시설 장비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시 인정된 사업주	• [인프라구축비 지원] 인프라구축비의 1/4이내, 2,000만원 한도 • [인프라구축 용자] 인프라구축비의 1/2이내, 4,000만원 한도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연 1%)

02.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 · 상호조정 및 부정행위조치

1 중복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④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
②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의3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
③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

④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②에 따른 각 지원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③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②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⑤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⑥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부정행위 조치

○ 부정행위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 하는 행위

○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 부정수금액 반환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령함.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5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 이 외에도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불이익 :

부정수금액의 반환 + 부정수금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 향후 3개월~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음

0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2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04. 성장유망업종 리스트

①신성장동력 산업 '개념'에 맞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②표준산업분류표에 속하고 ③대표품목 또는 HS코드의 제품 및 부품을 생산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HS Code(품목분류):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협약)에 의해 품목분류(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구분	세 부 업 종
01 신재생에너지	① 태양전지 :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전지 산업 ② 태연료전지 : 연료 중의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친환경 미래 발전시스템 산업 ③ 해양바이오 : 해조류, 해양미세조류 등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연료를 제조하는 산업 ④ 해양에너지 : 해양의 조력, 조류, 파력 및 해수온도차에너지를 전기·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및 설치구조물을 제조하는 산업 ⑤ 폐자원에너지 : 가연성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으로부터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⑥ 신재생에너지-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 : 비식량 섬유질계 바이오에너지작물, 유지작물, 농산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자원 및 가축분뇨로부터 자원화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⑦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 폐목재, 톱밥, 수피, 임목 등 임산물을 톱밥으로 분쇄 및 압축하여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⑧ 청정석탄에너지 : 저급탄 원료의 무공해 가스화 기술로 생산된 합성가스를 CO2 저감 공정을 통해 청정 액화연료(경유 등), 청정가스, 메탄올, Naphtha 등 다양한 화학연료로 제조하는 산업 ⑨ 대용량 전력저장 장치(ESS) : 리튬이차전지와 같은 기존의 중소형 이차전지를 대형화하거나, 화전에너지, 압축공기 등으로 대규모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
02 탄소저감 에너지	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기후변화협약 대비 지구 온난화 대응기술로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과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자원화를 포함하는 산업 ② 원전 플랜트 : 상용원전의 일부 미자립 기술 국산화 및 독자적 해외진출이 가능한 대용량 수출노형 개발 ③ 세일가스 : 비전통가스는 발견되는 지층에 따라 분류되는데, 세일가스는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층인 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
03 고도물처리	①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 막여과(Membrane Filtration)란 막(Membrane)을 여재로 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 ②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 중 유해성 물질의 용출(溶出)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③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 하수, 폐수를 필요 수질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기술 ④ 먹는샘물 : 먹는샘물 산업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물 산업 ⑤ 해양심층수 : 청정 해수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취수 및 탈염 등의 과정을 거쳐 먹는물, 음료, 주류, 식품, 농수산물, 그리고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미래 산업
04 LED응용	① LED응용 : 에피·칩·패키징 등 반도체 공정산업과 어플리케이션(조명) 산업

05 그린수송 시스템	① 그린카 :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높고 연비가 좋으며, 배출가스나 CO₂ 배출량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 ② 선박·해양시스템 :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신개념 선박·해양 시스템과 해양레저선박/장비를 비롯한 유망 조선산업 ③ 첨단철도 : 첨단철도차량산업(Electric & Machinery)이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철도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을 포괄한 개념
06 첨단그린도시	① U-City S/W : U-City S/W 산업은 첨단그린도시의 관리운영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통합플랫폼과 도시특성 및 시장특성에 따른 개별 서비스시스템S/W로 구분함 ② U-City IT H/W :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각종 IT장비 및 부품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 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③ U-City IT 융합 H/W :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지능형 건축자재, 지능형 토목자재 (모듈)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④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운영·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효율성·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 신개념 교통체계 ⑤ 첨단그린도시-GIS :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 ⑥ 첨단그린도시-그린홈 :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절감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저에너지·친환경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산업 ⑦ 태양전지 : 태양의
07 방송통신 융합 산업	①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 실감 IPTV 등 신개념 융합서비스를 위한 융합 네트워크 인프라 및 플랫폼,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 및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포괄 ② 차세대 무선통신 :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③ 방송통신미디어 : DTV, DMB, PTV, 실감미디어 등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및 관련 장비 (3D입체영상 및 음향, 초고화질 등으로 사실감과 현장감을 증가시킨 차세대 방송 및 유무선/모바일 휴대 기반의 개인 참여형 고품질 PTV 서비스 등을 포함)
08 IT융합시스템	① IT융합 : 주력산업에 IT를 융합접목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하고, IT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 ② RFID/USN : RFID와 USN 기술을 접목하여 정보 유통의 혁신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RFID/USN 기기, 서비스 및 응용에 관련된 가치사슬 상의 모든 player를 포함한 산업 ③ 차세대 반도체 :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등의 전자 시스템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소자류 시스템의 고성능·고기능화, 경박단소 및 저전력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야 ④ 차세대 디스플레이 : 기기의 정보를 사용자(End user)에게 시각적으로 제공해 주는 화면표시장치
09 로봇 응용	① 로봇 응용 : 로봇 및 관련 부품·소재의 제조·유통, 로봇 SW 및 서비스 콘텐츠 산업 및 타 분야의 로봇화로 파생되는 산업
10 신소재, 나노융합	①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는 그린수송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차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소재 ② Ionic Liquid(IL) 소재 : Ionic Liquid 소재는 고온안정성, 환경 친화성 등의 장점을 지녀 그린제품 및 그린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융합소재 ③ 나노탄소 융합소재 : 나노탄소 융합소재는 나노기술 개발 경쟁에 불을 붙인 대표적 핵심 전략 나노소재로 에너지, 환경, 전자·정보, 우주항공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국산화를 통한 소재 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 ④ 기능성 나노 필름 : 기능성 나노필름은 기존 필름에 나노기술을 융합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진 필름으로 Flexible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활용 ⑤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나노융합 바이오머신은 나노구조체 또는 나노부품으로 조립된 수십 μm 크기의 시스템으로 초소형 감지기, 구동기 등에 적용

11 바이오제약 (자원)·의료 기기	① 바이오 의약품: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②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③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바이오매스의 생물/화학적/물리적 전환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 제품 ④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BNT 융합기술로 조기 예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⑤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의학적으로 유용한 모든 생체정보를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영상화 하는 조기진단/ 치료분야의 최첨단 핵심기술 ⑥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노인성 질환 극복 및 고령화 인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기개발 및 제품 개발 ⑦ 화합물 제약: ①산물질 신약: 암 질환, 뇌· 신경질환, 심혈관질환, 대사성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감염성 질환, 고령화, 자가면역질환, 화귀질환 등 난치성 및 만성질환 치료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신약②혁신형 개량신약: DDS(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 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신약 ⑧ 천연물 제약: ①천연물: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 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②천연물 성분: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③천연물신약: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④천연물과학: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규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 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12 고부가 식품산업	①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식품이란 BT, IT, NT 등의 첨단기술 및 문화· 관광 등 타 분야와 접목되어 내재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식품을 일컬으며, 최근 식품안전 및 건강·웰빙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부합하는 새로운 식품을 의미, 기존 전통적 식품개념에서 탈피한 신개념 식품으로 고기능성, 친환경 안전, 특수목적(우주식품, 레저식품 등), 천연소재(화학합성물 무첨가), 개인맞춤형식품 등이 해당됨
13 글로벌 헬스케어	①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은 ①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②해외에 병원건설과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재원조달, 건축과 감리, 운영 등 병원 건립과 운영에 대한 일체의 서비스를 Turn Key Base로 제공하는 해외병원 신설· 운영 컨설팅업 및 ③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형태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u-Health로 구성된 산업.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① 글로벌 교육서비스: ▶ 생방향으로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온라인 및 전파방송을 통해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와 이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교수설계된 교육콘텐츠 제공과 시스템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는 산업 ▶ u-러닝 관련 기술, 콘텐츠, 서비스 등 한국의 u-러닝 표준모델 세계화 실현 및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산업
15 녹색 금융	① 녹색 금융: 향후 규제와 예정
16 콘텐츠· 소프트웨어	① 콘텐츠: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원체를 포함한다)의 제작· 유통· 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②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SW)산업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에 설치되어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품 혹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7 MICE, 융합관광	① MICE: Meetings(회의), Incentives(보상관광· 행사),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s(전시회) 유치· 개최 관련산업 ② 생태관광: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있는 여행 (세계생태관광협회)

전국 고용센터(문의처)

※ 각증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지청)	센터명	대표전화	청(지청)	센터명	대표전화	청(지청)	센터명	대표전화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02-2004-7031	평택	오산고용센터	031-8024-9805	포항	경주고용센터	054-778-2500
	서초고용센터	02-580-4900	강원	춘천고용센터	033-250-1900	구미	구미고용센터	054-440-3300
서울강남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794	강릉	강릉고용센터	033-610-1919		김천고용센터	054-429-8900
서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924		속초고용센터	033-630-1919	영주	영주고용센터	054-639-1122
서울서부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00	원주	원주고용센터	033-769-0900		문경고용센터	054-559-8200
서울남부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300	태백	태백고용센터	033-552-8605	안동	안동고용센터	054-851-8061
	서울강서고용센터	02-2063-6700		삼척고용센터	033-573-1900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서울북부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822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033-371-6260	광주광산고용센터		062-960-3200
서울관악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200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051-860-1919	전주고용센터	063-270-9100	
충부청	인천고용센터	032-460-4707		부산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100	전주	남원출장센터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641	부산북부	부산북부고용센터	051-330-9900	정읍고용센터		063-530-7500
인천북부	인천서부고용센터	032-540-2001			창원고용센터	055-239-0900	익산	익산고용센터
	부천고용센터	032-320-8900	창원	진해출장센터	055-239-0900	김제고용센터		063-540-8400
부천	김포고용센터	031-999-0900		마산고용센터	055-259-1500	군산	군산고용센터	063-450-0600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900	울산	울산고용센터	052-228-1919		부안출장센터	063-581-7637
의정부	구리고용센터	031-560-5800		김해고용센터	055-330-6400	목포	목포고용센터	061-280-0500
	남양주고용센터	031-560-1919	양산	밀양출장센터	055-356-8225		해남고용센터	061-530-2900
	동두천고용센터	031-860-1700		양산고용센터	055-379-2400	여수	순천고용센터	061-720-9114
	고양고용센터	031-920-3937	진주	진주고용센터	055-753-9090		여수고용센터	061-650-0155
고양	파주고용센터	031-860-0401		하동출장센터	055-884-8219	대전청	대전고용센터	042-480-6000
	수원고용센터	031-231-7864		거창출장센터	055-943-0735		공주고용센터	041-851-8501
경기	용인고용센터	031-289-2210		통영	통영고용센터	055-650-1800	공주	논산출장센터
	화성고용센터	031-290-0800	거제고용센터		055-730-1919	세종출장센터		044-861-8501
	성남고용센터	031-739-3177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053-667-6000	청주	청주고용센터	043-230-6700
	경기광주고용센터	031-799-2760		대구강북고용센터	053-606-8000		옥천출장센터	043-730-4101
성남	이천고용센터	031-644-3820	경산고용센터	053-667-6800	천안	천안고용센터	041-620-7400	
	안양고용센터	031-463-0700		대구동부고용센터		053-667-6900	충주고용센터	043-850-4000
안양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00	충주	제천고용센터	043-650-9310
	안산고용센터	031-412-6600	대구서부	대구달성고용센터	053-605-9510		음성고용센터	043-880-8600
안산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칠곡고용센터	054-970-1919	보령	보령고용센터	041-930-6200
	평택고용센터	031-646-1205	포항	포항고용센터	054-280-3000		서산고용센터	041-661-5600
평택	안성출장센터	031-671-1921		울진출장센터	054-783-0841	제주	제주고용센터	064-759-2450